2029 코인 세금, 내 처지별 가이드

11월 5일 정부 발표를 기준으로, 내 처지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어요. 내 숫자를 넣어 세금을 계산하는 워크시트도 들어 있어요.

읽는 법

표시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확정 지금 법이나 발표로 정해진 것 · 정부안 정부가 추진하지만 국회 통과 전인 것 · 미정 아직 아무도 정하지 않은 것.

국회에서 처리되면 **v2를 같은 DM으로 다시 보내 드려요.**

목차

2쪽 한눈에 보기 · 3쪽 많이들 잘못 아는 5가지 · 4쪽 내 처지 찾기 · 5~6쪽 처지별 정리 · 7쪽 2028년 12월 31일 규칙 · 8쪽 이월공제 시나리오 · 9쪽 내 세금 워크시트 · 10쪽 해외 거래소 · 11쪽 남은 일정과 할 일 · 12쪽 자주 묻는 질문

한눈에 보기

미뤄진 건 시기고, 새로 생길 건 손실 이월이에요

바뀌는 것 정부안

시행 2027 → 2029년 1월

4번째 연기(2022 → 2023 → 2025 → 2027 → 2029). 첫 신고는 2030년 5월.

안 바뀐 것 확정

250만 원 공제 · 22%

기타소득, 1년 이익에서 250만 원을 빼고 22%(지방세 포함). 코인끼리 손익은 같은 해 안에서 합산.

새로 생길 것 정부안

손실 3년 이월공제

한 해 손실을 다음 3년 이익에서 빼요. 2029년 손실은 2030~2032년 이익에서.

정부 발표 핵심 (11/5,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유예와 이월공제 모두 **소득세법을 바꿔야** 확정돼요. 이달 국회 조세소위 심사, 이번 정기국회 처리가 목표예요. 날짜는 아직 안 나왔어요.
- 미룬 이유는 셋이에요. 미국이 2029년부터 거래 정보 교환에 참여해서 그 전엔 해외 거래소 이용자를 파악하기 어렵고, 디지털자산법이 만들어지는 중이기 때문이에요. 이월공제는 가격 변동이 큰 자산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어요.
- 2029년 전에 산 코인은 **2028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매수가 중 높은 값**을 취득가로 인정해요 정부안. 2029년 전에 팔아서 확정한 손실은 이월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정부안.
- 스테이킹·에어드랍·디파이·무기한 선물·원화 스테이블코인 기준은 민관 워킹그룹이 정해요. 세부 기준은 2028년 상반기 발표 계획이에요 미정.

한 줄 정리

세금을 내는 날은 2년 늦춰졌지만, 2029년 전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나중 세금이 달라지는 규칙이 같이 들어왔어요. 이 가이드는 그 갈림길을 처지별로 짚어요.

출처 · 한국경제·아시아경제·주간경향·파이낸셜뉴스(11/5), 재정경제부 일문일답(뉴스핌·디지털애셋, 11/5)

많이들 잘못 아는 5가지

댓글창에서 자주 보인 착각

✕ **"유예 확정됐다"**

정부가 **추진**한다고 발표한 단계예요. 지금 법에는 아직 2027년 1월 시행으로 적혀 있어요. 국회에서 소득세법이 바뀌어야 2029년이 확정돼요.

✕ **"이월공제 생겼으니 지금까지 잃은 돈도 나중에 뺄 수 있다"**

2029년 전에 **팔아서 확정한 손실은 대상이 아니에요**(정부 설명). 이월공제는 과세가 시작된 뒤 생긴 손실부터예요. 단, 아직 팔지 않고 들고 있는 코인은 다른 규칙(7쪽)이 적용돼요.

✕ **"공제 250만 원이 올라갔다"**

이번 정부 발표엔 공제액·세율 변경이 없어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는 있어요.

✕ **"코인끼리 바꾸면 세금 없다"**

BTC를 ETH나 USDT로 바꾸는 것도 **판 것(양도)으로 봐요** 확정. 현금이 오가지 않아도 바꾼 시점의 가치로 손익을 계산해요.

✕ **"과세 전에 다 팔고 다시 사면 세금이 준다"**

2029년 전 보유분은 2028년 말 시가와 매수가 중 **높은 값**을 취득가로 인정해 주는 게 정부안이에요. 그래서 2028년 말까지 오른 부분은 팔지 않고 들고 있어도 세금 계산에서 빠지는 구조예요. 미리 팔아서 줄어드는 세금이 없을 수 있어요(6쪽 계산).

왜 이 다섯 가지인가 · 11/5 발표 뒤 뉴스·코인 채널 댓글 약 200개에서 자주 보인 오해예요. 가장 크게 반응한 쪽은 몇 년째 물려 있는 장기 보유자였어요.

출처 · 재정경제부 일문일답(뉴스핌·디지털애셋), 디지털데일리·디센트 법률사무소·택스워치(코인 교환 과세), 마이데일리·SBS(11/5)

하이라이터

내 처지 찾기

해당하는 줄에서 내 쪽 페이지를 찾으세요

지금 손실 난 코인을 몇 년째 들고 있다	→ A · 5쪽
수익이 나 있고, 다음 상승장까지 버틸 생각이다	→ B · 6쪽
한 달에 여러 번 사고팔거나 코인끼리 자주 바꾼다	→ C · 6쪽
바이낸스·바이비트 같은 해외 거래소를 쓴다	→ D · 10쪽
스테이킹·에어드랍·디파이 예치를 한다	→ E · 6쪽

여러 곳에 해당하면 다 보세요. 세금은 사람 단위로 1년치를 합쳐서 계산하기 때문에, 거래소가 여러 개여도 결국 한 장으로 모여요.

모두에게 공통인 것 3가지

- 신고는 거래소가 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다음 해 5월에 직접** 해요 확정 .
- 국내 거래소는 이용자별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내요. 그래도 다른 거래소·지갑 내역은 본인이 모아야 해요 확정 .
- 매수 날짜·가격·수량·수수료·입출금 기록을 지금부터 내려받아 두는 게 기본 준비예요.

출처 · 데일리안(2026-09-08), 디센트 법률사무소(2026-10-02), 디지털데일리(2026-08-06), 블록미디어

처지 A · 몇 년째 물려 있는 사람

팔아서 끝낸 손실과 들고 있는 손실은 다르게 계산돼요

상황	정부안 처리
2029년 전에 팔아서 손실 확정	세금이 없는 기간의 거래라 손실도 세금 계산에 남지 않아요. 이월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정부안
2029년 이후까지 들고 있음	취득가 = 실제 매수가와 2028년 12월 31일 시가 중 **높은 값** 정부안. 매수가가 더 높으면 매수가가 그대로 남아요
2029년 이후에 팔아서 손실	그 해 다른 코인 이익과 먼저 합산하고, 남은 손실은 다음 3년 이익에서 공제 정부안

예시 (가상 계산 · 정부안 기준)

예를 들어 2021년에 1,000만 원어치 산 알트코인이 지금 50만 원(−95%)이고, 2028년 말 시가가 80만 원이라고 가정해요.

선택	세금 계산에 남는 것
2028년에 50만 원에 판다	손실 950만 원 → **세금 계산에서 사라짐**
들고 있다가 2030년에 300만 원에 판다	취득가 1,000만 원 → 손실 700만 원 → **2031~2033년 이익에서 공제**
들고 있다가 2030년에 20만 원에 판다	손실 980만 원 → 공제 대상이지만 **가격 손실 자체는 더 커짐**

들고 있을 때 매수가가 취득가로 남는 건 매수가가 2028년 말 시가보다 높기 때문이에요. 이월공제는 손실을 메워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그 세금만 줄여 줘요. 코인값이 더 떨어지면 손실은 그만큼 커져요.

판단할 때 볼 것 (매매 권유가 아니라 계산 규칙이에요)

- 손절할지 버틸지는 코인 자체의 전망과 내 돈 사정으로 정하는 거예요. 세금은 그다음 순서예요.
- 다만 "어차피 손실이니 언제 팔든 똑같다"는 생각은 틀릴 수 있어요. 2029년 이후 이익을 낼 계획이 있다면, 2029년 이후에 확정한 손실만 그 이익을 깎아 줘요.
- 매수 기록(날짜·가격)이 없으면 이 혜택을 증명하기 어려워요. 지금 바로 내려받아 두세요.

출처 · 재정경제부 일문일답(뉴스핌·디지털애셋, 11/5) · 계산은 정부안을 적용한 가상 계산이며 법 통과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처지 B · 수익 난 채로 버티는 사람

"2028년까지 다 팔아야 하나?"를 숫자로 비교해 봤어요

예를 들어 2023년에 1,000만 원어치 산 코인이 2028년 말 시가 3,000만 원, 2030년에 3,500만 원이 된다고 가정해요 (가상 계산 · 정부안 기준).

선택	취득가	과세 대상 이익	세금 (22%)
2028년에 3,000만 원에 팔고, 다시 3,000만 원에 사서 2030년에 판다	3,000만 원	500 − 250 = 250만 원	**55만 원**
팔지 않고 들고 있다가 2030년에 판다	3,000만 원 (2028년 말 시가가 매수가보다 높음)	250만 원	**55만 원**

이 경우 결과는 같아요. 2028년 말 시가가 매수가보다 높으면, 팔고 다시 사든 들고 있든 취득가가 2028년 말 시가로 같아져요. 2028년 말까지 오른 2,000만 원은 어느 쪽이든 세금 계산에서 빠지고, 사고파는 쪽은 수수료만 더 들 수 있어요. 2028년 말 시가보다 싸게 팔고 다시 샀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 **달라지는 경우** · 2029년 이후에 더 오를수록 세금이 붙는 부분이 커져요. 위 예에서 2030년 가격이 5,000만 원이면 과세 대상은 (5,000 − 3,000 − 250) = 1,750만 원, 세금은 385만 원이에요. 정부안이 국회에서 바뀌면(예: 기준일 변경) 이 계산도 달라져요.

처지 C · 자주 사고파는 사람

- 코인끼리 바꾸는 것도 양도예요 확정. 하루에 열 번 바꾸면 열 번 다 손익이 생겨요.
- 취득가는 사람 단위로 1년치 평균 단가를 내는 방식(총평균법)이라는 게 현재 자료 기준이에요. 2029년 적용 방식은 워킹그룹이 다시 정할 수 있어요 미정.
- 1년 안의 이익과 손실은 모든 코인·거래소를 합산해요 확정. 손실 난 해가 있으면 이월공제로 넘겨요 정부안.

처지 E · 스테이킹·에어드랍·디파이

- 지금 법엔 '팔기'와 '빌려주기'만 있어요. 빌려주고 같은 코인을 돌려받는 렌딩은 빌려주기로 비교적 분명해요 확정.
- 스테이킹 보상을 받을 때 과세할지 팔 때 과세할지, 에어드랍 취득가를 0원으로 볼지 받은 날 시가로 볼지는 **아직 안 정해졌어요** 미정. 2028년 상반기 세부 기준 발표 계획이에요.
- 지금 할 일: 받은 날짜·수량·그날 시가를 기록해 두세요. 어느 쪽으로 정해져도 필요한 자료예요.

출처 · 재정경제부 일문일답(뉴스핌·디지털애셋), 디지털데일리·디센트·택스워치, 데일리안(2026-09-08), 블록미디어(2026-10-14) · 계산은 가상 계산

2028년 12월 31일 규칙 정부안

2029년 전에 산 코인은 높은 쪽 가격이 취득가예요

세금이 없던 시절의 상승분까지 과세하지 않으려고 두는 규칙이에요. 2028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매수가 중 높은 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해요.

경우	매수가	2028.12.31 시가	인정 취득가	뜻
오른 코인	1,000만	3,000만	**3,000만**	2028년까지 오른 2,000만 원은 과세 안 됨
물린 코인	1,000만	80만	**1,000만**	매수가가 남아 나중 손실로 인정

매수가를 증빙하는 방법과 세부 기준은 2028년 상반기 발표 계획이에요 미정.

이 규칙 때문에 생기는 할 일

- **매수가 증빙:** 거래소 거래 내역을 연도별로 내려받아 보관해요. 거래소가 문을 닫거나 계정이 정리되면 다시 받기 어려워요.
- **2028년 12월 31일 시가:** 공식 기준 시가는 그때 정해지는 고시 가격이에요. 내 보유 목록(코인·수량)을 그날 기준으로 적어 두면 첫 신고가 쉬워져요.
- **옮긴 코인:**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건 판 게 아니에요 확정. 다만 옮긴 기록(지갑 주소·TXID)이 없으면 매수가를 잇기 어려워요.

주의 · 이 규칙은 정부안이에요. 기사 중에는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쓴 곳도 있어요. 국회 처리 결과가 나오면 v2에서 다시 확인해 드려요.

출처 · 재정경제부 일문일답(뉴스핌·디지털애셋, 11/5), 파이낸셜뉴스(11/5), 데일리안·디센트(지갑 이동·기록)

이월공제 시나리오 3개 정부안

같은 손익이라도 순서에 따라 세금이 달라요

① 손실 뒤 이익

연도	손익	이월공제 없음	이월공제 있음
2029	−1억 원	0원	0원 (1억 이월)
2030	+5,000만 원	**1,045만 원**	**0원** (남은 손실 5,250만)

(5,000만 − 250만) × 22% = 1,045만 원. 이월공제는 250만 원 공제를 먼저 하고 남은 이익에서 빼요.

② 이익 뒤 손실

연도	손익	세금
2029	+5,000만 원	**1,045만 원**
2030	−1억 원	0원, 손실 1억은 2031~2033년으로 이월

정부 설명은 손실을 "이후 3년" 이익에서 빼는 방식이에요. 이미 낸 2029년 세금을 돌려받는 내용은 발표에 없어요.

③ 3년을 넘긴 경우

연도	손익	공제된 손실	세금
2029	−1억 원	—	0원
2030 / 2031 / 2032	각 +1,000만 원	각 750만 원	각 0원
2033	+1,000만 원	0원 (기간 끝)	**165만 원**

3년 동안 공제된 손실은 2,250만 원. 남은 7,750만 원은 2033년부터 공제되지 않아요. 공제할 해는 고를 수 없고, 이익이 난 해에 자동으로 빼요.

한 줄 정리 · 이월공제는 손실이 먼저 나고 이익이 3년 안에 날 때 가장 크게 작동해요. 큰 손실이 나면 그 해와 다음 3년을 한 묶음으로 보세요.

출처 · 재정경제부 일문일답(뉴스핌·디지털애셋, 11/5) · 모든 표는 정부안을 적용한 가상 계산

내 세금 워크시트

내 숫자를 넣어 1년 세금을 내 보세요

2029년 이후 한 해를 기준으로 적어요. 모든 거래소·지갑을 합친 숫자예요.

#	항목	내 숫자
①	1년 동안 판 금액 합계 (원화 매도 + 코인끼리 교환한 시점의 가치)	
②	판 코인의 취득가 합계 (2029년 전 보유분은 매수가와 2028.12.31 시가 중 높은 값)	
③	거래 수수료 합계	
④	올해 손익 = ① − ② − ③ (마이너스면 ⑧로)	
⑤	기본공제 250만 원	**2,500,000**
⑥	최근 3년 안에 넘어온 손실	
⑦	과세 대상 = ④ − ⑤ − ⑥ (0보다 작으면 0)	
⑧	**세금 = ⑦ × 22%**	
⑨	다음 해로 넘길 손실 잔액 (④가 마이너스면 그 금액 + ⑥ 중 못 쓴 금액, 손실 난 해 표시)	

빠른 확인표 (1년 이익, 넘어온 손실 없음)

1년 이익	5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
세금	55만	165만	605만	1,045만	2,145만

취득가 계산은 현재 자료 기준 사람 단위 1년 평균 단가(총평균법)예요. 2029년 적용 방식과 세부 증빙 기준은 바뀔 수 있어요. 실제 신고는 확정 법령과 홈택스 안내를 따르세요.

처지 D · 해외 거래소를 쓰는 사람

세금은 2029년부터(정부안)지만 계좌 신고는 지금도 의무예요

항목	내용
과세 대상	국내 거주자는 해외 거래소 소득도 과세 대상이에요 **확정**. 국내·해외·지갑을 모두 합쳐 계산해요
해외금융계좌 신고	2023년부터 해외 가상자산 계좌도 포함 **확정**. 전년도 **매달 말일 중 하루라도** 모든 해외 금융계좌(현금·주식·코인 합산) 잔액이 **5억 원을 넘으면** 6월 30일까지 홈택스로 신고해요
안 하면	미신고 금액에 비례한 과태료가 있고, 50억 원 넘게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명단 공개 대상이에요 **확정**
거래 정보 교환(CARF)	한국은 2024년 11월 다자협정에 서명했고 2027년 첫 교환 그룹이에요. 2026년 거래분부터 모아서 2027년에 주고받아요 **확정**. 미국은 2029년부터 참여해요

그래서 미룬 거예요 · 정부가 밝힌 유예 이유 중 하나가 "해외 거래 정보가 부족해 국내 거래소 이용자만 불리하다"였어요. 2029년부터는 미국 거래소 정보까지 받게 돼요. 해외 거래소를 쓴다고 세금을 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지금 할 일

- 해외 거래소 입출금·매매 내역을 연도별로 내려받기
- 매달 말일 기준 해외 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 근처라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기
- 해외에서 국내로 옮긴 코인의 매수가 기록 남기기(옮긴 뒤 매수가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는 발표에서도 아직 풀리지 않았어요 **미정**)

출처 · 파이낸셜뉴스(11/5), 한국경제(2025-05-31)·SBS Biz(2025-05-29)·블록미디어(해외금융계좌), 법률신문(2026-10-19)·블록미디어(CARF), 아시아경제·경향신문(미국 2029)

남은 일정과 할 일 달력

2026년부터 첫 신고까지, 언제 무엇을

지금 ~ 2026년 말

거래소별 거래 내역 내려받기 시작. 스테이킹·에어드랍 받은 날짜·수량·시가 기록. 국회 조세소위·정기국회에서 유예·이월공제 처리 미정 → 결과 나오면 v2 발송

2027년

CARF 첫 정보 교환(2026년 거래분). 상반기 민관 워킹그룹 제도 개선안,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 제출 계획 미정.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자)

2028년 상반기

스테이킹·에어드랍·디파이 등 세부 과세 기준 발표 계획 미정

2028년 12월 31일

의제취득가 기준일 정부안. 내 보유 코인 목록·수량 정리, 매수가가 높은 코인은 매수 증빙 확인

2029년 1월 1일

과세 시작 정부안. 이날부터 생긴 손익이 세금 계산에 들어가요. 미국 CARF 참여

2030년 5월

2029년분 첫 신고·납부. 손실이 났다면 이월할 금액을 신고에 남겨요

국회가 연말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 지금 법에는 2027년 1월 시행으로 적혀 있어요.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바로 정리해 드릴게요.

반대 목소리도 있어요

시민단체는 "세 차례 유예하고도 또 준비 부족"이라며 과세 후퇴를 비판했고, 업계는 환영하면서도 "또 미뤄지지 않게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라"고 요구했어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최종안이 바뀔 여지가 있어요.

출처 · 아시아경제·파이낸셜뉴스·이투데이(일정), 프레시안(참여연대 성명), 파이낸셜뉴스·뉴스핌(업계·전문가), 법률신문(CARF)

자주 묻는 질문 10

Q1. 그래서 유예 확정이에요?
아직이에요. 정부안이고,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돼요.

Q2. 지금까지 손절한 돈은 나중에 공제돼요?
정부 설명으로는 안 돼요. 2029년 전에 팔아서 확정한 손실은 이월공제 대상이 아니에요(5쪽).

Q3. 2028년까지 다 팔아야 세금을 아끼나요?
정부안대로면 2028년 말까지 오른 부분은 들고 있어도 세금 계산에서 빠져요. 미리 팔아서 줄어드는 세금이 없을 수 있어요(6쪽).

Q4. 250만 원 공제는 그대로예요?
이번 발표에선 그대로예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는 있어요.

Q5. 코인끼리 바꿔도 세금이에요?
네. 교환도 판 것으로 봐요. 바꾼 시점의 가치로 손익을 계산해요.

Q6. 거래소가 알아서 계산해 주나요?
아니요. 본인이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요. 국내 거래소 자료는 국세청에 가지만, 여러 거래소·지갑을 합치는 건 본인 몫이에요.

Q7. 이월된 손실은 언제 사라져요?
손실이 난 다음 해부터 3년 안에 이익에서 빼지 못한 부분은 공제되지 않아요(8쪽 ③).

Q8. 개인 지갑으로 옮기면 세금이에요?
내 계정에서 내 지갑으로 옮기는 건 판 게 아니에요. 다만 옮긴 기록을 남겨야 매수가를 이을 수 있어요.

Q9. 스테이킹 보상은 언제 세금을 내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2028년 상반기 세부 기준 발표 계획이에요. 받은 날짜·수량·시가를 기록해 두세요.

Q10. 상장폐지 공지가 떠서 다른 거래소로 옮기면요?
옮기기만 하면 판 게 아니에요. 그 거래소에서 팔거나 다른 코인으로 바꾸는 순간이 양도예요. 세부 처리는 기준 발표 때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업데이트 약속 · 국회 처리 결과가 나오면 이 가이드 v2를 같은 DM으로 다시 보내 드려요. 매일 돈의 흐름 정리는 인스타 @highlighter_kr, 실시간 속보는 텔레그램 t.me/highlighter_kr에서 볼 수 있어요.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하이라이터는 금융투자업자나 세무사가 아니며 개별 투자·세무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세금 신고는 확정 법령과 전문가 확인을 따르세요. 가상자산 투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산은 모두 2026-11-06 기준 정부안을 적용한 가상 계산이에요.